

제 증명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5-2-7)

제 증명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결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제 증명서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 증명서 발행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증명별 구분	수 수 료		비 고
	국 문	외 국 문	
재학 증명서	500원	1,000원	최대200일(1책당)
재직 증명서	500원	1,000원	
졸업 증명서	500원	1,000원	
학위 증명서	500원	1,000원	
졸업예정증명서	500원	1,000원	
수료 증명서	500원	1,000원	
성적 증명서	500원	1,000원	
교육비납입증명서	500원		
기타증명서	500원	1,000원	
대출도서 연체료	1책 1일: 100원	1책 1일: 100원	
도서대출용 바코드재발급	1,000원	1,000원	
도서대출증(카드) 재발급	3,000원	3,000원	
분실도서 정리비	2,000원	2,000원	
분실도서의 가격미상 또는 절판시	교내 복사비의 2배 (페이지당)	교내 복사비의 6배 (페이지당)	

제3조 (징수대상 요금) ①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과 그 요금은 다음에 의한다.(개정 98.9.1)

② 사진으로 전항의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수수료외에 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징수면제)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타 부서에서 그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한 증명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수수료 징수 및 처리) ① 수수료는 제 증명서 청구시 징수하여 세입 조치한다.

② 납입된 수수료는 증명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증명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5-2-7)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제1항)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